

시 방 서

제 1 장 공사개요

제 1절 개요

1. 공 사 명 : 승강기 메인로프, 쉬브 교체 공사
2. 현 장 명 : 다산한양수자인리버파크아파트

제 2절 공사 범위

1. 현장 실측 및 주변 보양
2. 공사 범위

품 명	규격 및 사양	단위	수량	해당 동, 호기
MAIN SHEAVE	GT25 D8*7R	EA	1	3206-2
MAIN ROPE	8Ø*124M*7本	M	868	

3. 현장 정리 및 폐기물 처리

제 2 장 공사시방서

제 1절 일반사항

1. 목 적 : 본 시방서는 귀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 중 "갑"이라 함은 발주자 귀 아파트를 말하며 "을"이라 함은 수급자(시공업체)를 말하고 "감독관"이라 함은 귀 아파트가 당 작업의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지정한 자를 말한다.

나. "갑"과 "을"은 본 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

가. 본 작업은 귀 아파트의 일상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공사계약 체결 시 작업공정표를 작업자 출입신청서(당사소정양식)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출입자 명단에 누락된 사람은 출입할 수 없다.

다. 작업 시 기존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시는 즉각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해야 한다.

라.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작업원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본 작업 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 실시해야 하며 임의의 작업은 절대 불허한다.

바. "을"은 공사 시행 전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공서의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사.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 (2) 시공 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 (3) 기타 "갑"의 지시 사항

아. 본 공사는 공사 완료 후 기능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고, "갑"의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인정할 때를 준공으로 본다.

자. 공사 중에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매일 수집하여 일정 장소에 집합해서 장외 반출 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공사 시에 발생한 잔재 또는 부산물 등을 깨끗이 수집하여 장외 반출을 하여 관계 법규에 적합하도록 "을"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차. 현장 실측 및 주변 보양

- (1) 작업 현장의 자재 및 장비의 반, 출입은 건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변 보양을 철저히 한 후 자재의 반, 출입을 하여야 한다.
- (2) 작업 현장에는 용접, 절단, 운반 등에 따른 바닥의 손상 등이 예상되는 경우 바닥 보양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카. 자재

- (1)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KC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C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본 공사를 위해 현장에 입고되는 모든 자재는 규격, 품질, 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수 후 승인을 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의 사용 시 감독관은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손실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타. 현장 작업 안전관리

- (1) 공사 중 각 공정 마다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고소작업, 밀폐 작업, 화기취급, 전기 활선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으므로 주변 보양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소화전 또는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유사시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준비한 후 "갑"의 승인을 받고 작업감독관 입회하에 작업을 하여야 하되 임의의 작업은 불허한다. 단, 안전조치 없이 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제 2 절 특기사항

1. 와이어로프(WIRE ROPE) 교체

- 가. 와이어로프는 현 기존 규격과 동일한(순정부품) 것으로 시공한다.
- 나. 와이어로프 마심은 고층용에 적합하도록 그리스를 합침한 제품이어야 한다.
- 다. 와이어로프 소켓 고정용 너트는 더블 너트로 견고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 라. 와이어로프의 비틀림, 찌그러짐, 부식 등 외상이 있는 제품은 설치를 불가한다.
- 바. 와이어로프는 균등한 장력을 받도록 정밀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 사. 와이어로프 하차 시 떨어뜨려 외상이나 압흔을 받지 않도록 하차 장비를 사용 하차한다.
- 아. 와이어로프 교체 전 꼬임상태를 충분히 풀어 교체 후 비틀림 현상이 없어야 한다.
- 자. 와이어로프 교체 후 균형추와 완충기거리, 카와 완충기 거리가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차. 공사 완료 후 1개월 주기로 안정 시까지 로프, 장력, 레벨 조정하여야 한다.
- 카. 소켓 바빗트 채움 끝 부분은 각 가닥을 접어서 구부린 것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되어있어야 한다.
- 타. 소켓트에 바빗트 채움 전 소켓을 예열하여 소켓 내 기포 등 공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파. 소켓트내 바빗트 채움 후 노출 와이어로프에 그리스를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제품사양

가. 와이어로프(WIRE ROPE)

- (1) 스펙 : 8Ø*124M-7本
- (2) 취득규격 : ㉔

나. 메인쉬브(MAIN SHEAVE)

- (1) 구조 : GT25 D8*7R
- (2) 취득규격 : ㉔

제 3 절 기타

- 1. 본 공사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가 또는 교체되는 부품에 대하여는 본 공사 금액범위 안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 2. "을"은 본 공사의 각 공정에 대한 사진촬영(공사 전, 중, 후)을 실시하되 사진촬영용 표지판을 설치 후 촬영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 사진을 당사 표준 사진철에 부착하여

준공 검사원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3. 본 공사 실시예 있어 현장 여건상 휴일 및 야간에 실시로 인한 추가 공사금액은 계상하지 않는다.
4.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